

제2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2024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1 장

개인적 법익

제1장

개인적 법익

사례
01

사생활 보호 - 발견 후 실종 아동 초상권 침해

의결번호	제2024-452호	언론사	국민일보(주)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24년 04월 18일 시사면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도서 발견… 동행 남성 조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자인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광주광역시에서 실종 신고되었던 중학생이 무사히 귀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실종 당일 폐쇄 회로 CCTV에 찍힌 아동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해당 사진은 실종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도 실종 아동의 초상을 비식별 처리 없이 공개하여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실종 당시 수사기관이 수색과 제보 확보 등 공익적 목적에서 학생의 초상을 공표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보도의 시점이 학생 발견 이후였다면, 그 초상 공표로 달성할 수 있었던 공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견 이후에도 초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해당 학생은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 사인(私人)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이기도 하다. 이 경우 실종 당시 초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보도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정당성이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미성년자인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욱 크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실종 아동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실종 아동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하였다.

사 례
02

사생활 보호 - 유명인 가족 초상 공개

의결번호	제2024-450호	언론사	원픽뉴스
대상보도	원픽뉴스 2024년 04월 01일 연예면 「"최근 연애 경험 있어".. 은지원 '재혼' 언급에 전 부인과의 이혼 사유 재조명됐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과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유명 연예인의 재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전 배우자의 초상이 식별 가능한 결혼사진과 증명사진 그리고 성명을 함께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표된 초상 및 성명이라 하더라도,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해당 정보의 재공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 배우자는 유명 연예인과 달리 일반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해당 보도의 핵심 내용 또한 전 배우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를 고려할 때, 당사자의 초상 및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 배우자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유명 연예인의 전 배우자의 초상과 성명을 비식별 처리하였다.

사 례
03

사생활 보호 - 미성년 자녀 초상 공개

의결번호	제2024-23호	언론사	(주)코리아엔터테인먼트미디어
대상보도	텐아시아 2023년 12월 04일 연예가화제면 「[전문] 최민환-율희, 결혼 5년만 이혼…」세 아이는 남편이 양육」[TEN이슈]」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① 심의 개요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부부의 이혼 사실을 보도하면서, 과거 육아 예능프로그램 출연 당시 공식 석상에서 촬영된 가족사진을 사용하였다. 해당 사진에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에 비식별 조치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권고 이유

현재의 모습과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과거에 공표된 초상이라 하더라도,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 초상의 재공표에 대해 자녀 본인이 동의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자녀는 연예인 부모와 달리 일반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공적 인물로 보기도 어렵고, 해당 보도의 핵심 내용 또한 자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를 고려할 때, 자녀의 초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일반 성인에 비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삭제하였다.

사 례
04

사생활 보호 - 내밀 영역 공개

의결번호	제2024-877호	언론사	(주)국제뉴스
대상 보도	국제뉴스 2024년 09월 19일 연예면 「나는 솔로' ○○기 ○○, 강제입원설 불거지자 제작진 "확인 불가"」 제하의 기사		
침해 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 사항	대상 보도 중 사인(私人)의 신상정보가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연애 예능프로그램 출연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의혹을 보도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초상과 방송 출연 시기, 방송 출연 당시 사용한 가명을 함께 공표하여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보도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게시글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입원 여부 및 정신질환 관련 정보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해당 정보의 공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지 방송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 사인(私人)에 해당하는 인물의 병력 등 구체적인 건강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표되어서는 안 되는 사적 정보로,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 례
05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신상 공개 ①

의결번호	제2024-608호	언론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24년 06월 03일 사회면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 백종원 먹방도 논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① 심의 개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관련자로 지목된 사인(私人)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인용하며 해당 인물의 성명을 비식별 처리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권고 이유

해당 인물의 신상정보가 이미 여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사자가 범죄 관련 보도에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작다.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사인(私人)의 신상정보 공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된 사인(私人)의 성명이 공개된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사 례
06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신상 공개 ②

의결번호	제2024-91호	언론사	투데이 플로우
대상보도	투데이 플로우 2023년 12월 23일 연예면 「물어보살 최장암 4기 故최성희 '상간녀'...84년생 한X주 신상 근황 공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 등의 신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① 심의 개요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방영된 불륜 사연을 보도하면서, 한 유튜브 채널이 폭로한 상간녀의 성명, 출생 연도 등 신상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사진과 함께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권고 이유

성명 및 기타 신상정보 일부가 유튜브에 의해 이미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또한, 불륜 사건을 다룬 보도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성명 등을 공표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보도가 세간의 관심을 끈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사인(私人)의 신상정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공표는 성명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 례
07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신상 공개 ③

의결번호	제2024-753호	언론사	파이낸셜투데이
대상보도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2024년 07월 19일 금융면 「[단독]“동일 진단서, 한 보험사만 無지급” 무심코 동의한 ‘의료자문’ 발목」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개인정보가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보험금 지급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보험 가입자의 제보를 보도하면서, 해당 가입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진단서를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보도에 인용된 진단서가 보험 가입자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성명·주소 등 기타 개인정보가 비식별 조치된 점을 감안할 때, 연락처의 공표에 대해서만 당사자가 동의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 사실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 자료로서 진단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무관한 일반 사인(私人)의 휴대전화 번호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보험 가입자의 연락처가 공개된 진단서를 삭제하였다.

사 례
08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신상 공개, 통신비밀 침해

의결번호	제2024-7호	언론사	모두서치
대상보도	모두서치 2023년 12월 13일 사회면 「"오빠 궁디 팡팡 해줘요, 먹고 싶다.." 충남 천안 ○○대 40대 교수 20대 제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불륜으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신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 통신 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국내 한 대학의 사제 간 불륜 사건을 보도하면서, 대학명, 출생 연도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당사자 간 은밀한 사생활이 포함된 사적 통신 내용을 비식별 조치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1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통신 내용이 불륜 당사자의 배우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로되었고, 이후 해당 교수의 교원 정보가 소속 대학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문제가 된 공표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이 지역 사회의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안으로 일부 공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한 당사자의 신상정보 및 내밀한 사적 통신 내용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및 사적 통신 내용의 공표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09

사생활 보호 - 통신비밀 침해

의결번호	제2024-354호	언론사	뉴스속닥
대상 보도	뉴스속닥 2024년 03월 02일 엔터면 「"성인 용품을.." 현봉식 여자친구 인스타, '바람+반려견 유기' 허위사실 유포 연인 고소」 제하의 기사		
침해 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2조(명예훼손 금지)		
권고 사항	대상 보도 중 당사자의 사적인 통신 내용이 공표된 부분 및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국내 유명 배우의 사생활 폭로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배우와 연인 사이로 추정되는 인물 간의 통신 내용을 비식별 조치 없이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2항 및 제2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명예훼손 금지) 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해당 통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이며, 해당 배우가 폭로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고 폭로자를 고소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가 공표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낮다. 비록 통신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대화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직업적 특성상 대중에 미치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문란한 사생활을 암시하는 내용은 사회적 평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설령 이 기사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을 다뤘더라도, 공적 인물도 사생활의 전면적인 포기를 요구받을 수 없으며, 이성 관계에서의 사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통신 내용의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사
례
10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신원 공개 ①

의결번호	제2024-755호	언론사	민심뉴스
대상보도	민심뉴스 2024년 07월 15일 뉴스면 「양주 태권도장 5세 아동 심정지 사건 도장 어디?... 용의자 CCTV 삭제, 아동학대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양주시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고인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도록 태권도 학원명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사건 이후 해당 학원이 폐업하였더라도, 수년간 공표된 학원명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이 단독 대표자로 재직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명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불과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나

향후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적 인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보도 당시 미결구금 상태여서 형사사법 집행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이 보도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공적 인물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실명이나 신원 공개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공표된 학원 관련 정보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 보도의 원칙에 반하며,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⑦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제5항·제8항·제9항을 준용한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피고인의 학원명을 삭제하였다.

사
례
11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신원 공개 ②

의결번호	제2024-40호	언론사	(주)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톱스타뉴스(TopStarNews) 2023년 12월 28일 「가세연, 김○○ 녹취록 공개→배우 사망…"범죄자일 뿐, 피해자 아냐"」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유명 연예인의 마약 및 협박 의혹 사건을 보도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연예인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의 성명을 비식별 조치 없이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마약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의 형사상 신분은 '피고인'에 불과하며, 유명 유튜브 버의 폭로로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물을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해당 보도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공익에 일정 부분 기여하더라도, 사건 경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성명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성명 및 사생활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⑦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제5항·제8항·제9항을 준용한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삭제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가세연, 김○○ 녹취록 공개→배우 사망..."범죄자일 뿐, 피해자 아냐"	가세연, 유형업소 여실장 녹취록 공개→배우 사망..."범죄자일 뿐, 피해자 아냐"

사 례
12

범죄사건 보도 등 - 피해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4-520호	언론사	(주)문화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문화일보 2024년 05월 09일 사회면 「부산지법 앞서 50대 유튜버가 흉기 살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강력범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① 심의 개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유튜버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명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권고 이유

보도에서 공표된 유튜브 채널은 피해자가 초상을 공개하며 직접 운영·출연하는 채널로서, 채널명 공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가해자는 범행 후부터 검거 시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공개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자 특정 및 피해 사실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정황은 없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명 공개는 당사자 및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審理)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범죄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 명을 삭제하였다.

사 례
13

성폭력피해자 보호 - 성폭력 피해 상세 묘사

의결번호	제2024-631호	언론사	살구뉴스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6월 09일 뉴스면 「밀양 판결문 전문 요약 해보니...엇갈린 가해자· 피해자 근황 오열(+신상 번호)」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피해 상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이 상세히 묘사된 판결문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식별 조치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② 언론은 성폭력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성범죄 보도의 특성상 범죄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묘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동작, 피해자의 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보도는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저해하고 2차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한 자세하고 선정적인 묘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사
례
14

아동학대사건 보도 - 아동학대 행위 상세 묘사

의결번호	제2024-636호	언론사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4년 06월 02일 핫이슈면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kg 계모 위에서 뛰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6조의2 (아동학대사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학대 피해자의 피해 상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① 심의 개요

2020년 천안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반복적인 학대 수법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 피해 상태를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② 언론은 아동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권고 이유

아동학대 보도의 특성상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학대 행위 묘사가 포함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려는 목적을 넘어서, 구체적인 학대 수단과 방법,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전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피해 아동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아동의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과도한 묘사는 피해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
례
15

신고자등 보호 - 특정 범죄 신고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4-779호	언론사	(주)연합뉴스
대상보도	연합뉴스 2024년 07월 29일 최신기사면 「채팅하다 알게 된 초등학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20대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8조 (신고자등 보호)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의제강간 사건을 보도하면서, 최초 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직업, 관계 등)를 기사 내용에 포함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신고자등 보호)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2. 부패행위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 권고 이유

관련 보도 및 후속 보도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고 사실의 공표에 대해 신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해당 보도에서 성명이나 소속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보건교사가 학교 내 소수에 해당하고, 피의자들이 피해 아동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신고자의 소속 학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신고자의 신원이 추정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형사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고자에 대한 보복 위험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의 공표는 신고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2024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2장

사회적 법익

제2장

사회적 법의

사례
16

차별 금지 - 국적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4-454호	언론사	살구뉴스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4월 17일 뉴스면 「한국 중국화 되나? 쿠팡 프레시백 수거 쓰레기 넘쳐.. "똥이나 고양이 사체도" 모두 충격」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온라인 구매 물품 배송 과정에서 다회용 가방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특정 국가를 비유리적 행위의 상징처럼 묘사하는 '중국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특정 국가는 기사 내용의 핵심 논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중국화'라는 표현은 불필요하게 특정 국가를 연상시키는 비유로 사용되어 독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소지가 있다.

언론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특정 국가나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기사 제목은 독자의 첫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극적인 표현 사용은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나 편향된 시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 제목의 자극적인 표현은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우려가 커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사 례
17

차별 금지 - 장애 차별 표현 ①

의결번호	제2024-133호	언론사	(주)데일리안
대상보도	데일리안 2024년 01월 12일 경제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외식업계 “병어리 냉가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① 심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외식 업계의 반응을 보도하면서, 업계의 우려와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기사 제목에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병어리 냉가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권고 이유

해당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존재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와 관련하여 오해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보도준칙과 자율강령에서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언론 보도에서의 표현 선택은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 제목에 사용된 표현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병어리 냉가슴’이라는 표현 대신 ‘속알이에 전전공공’이란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외식업계 “병어리 냉가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외식업계 “속알이에 전전공공”

사 례
18

차별 금지 - 장애 차별 표현 ②

의결번호	제2024-45호	언론사	프레스시안협동조합
대상보도	프레스시안(Pressian) 2023년 12월 18일 전국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사태 전주시·일부 시의원·언론 꿀먹은 벙어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정부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자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도하면서, 해당 지역 업체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여론 활동을 펼친 일부 시의원 및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기사 제목에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꿀 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존재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와 관련하여 오해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보도준칙과 자율강령에서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 제목에 사용된 표현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꿀먹은 방어리’라는 표현 대신 ‘딴청’이란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사태 전주시 · 일부 시의원 언론 꿀먹은 방어리"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에 전주시·일부 시의원 언론은 딴청"

사 례
19

범죄 묘사-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의결번호	제2024-736호	언론사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4년 07월 11일 SNSFeed면 「"인체 해부하고 싶었다"...모텔서 살인, 살점 모두 도려낸 10대 악마」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제21조(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잔인한 내용의 제목 및 본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2013년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강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단 및 방법을 사건 경과에 따라 지나치게 상세히 서술하고 이를 제목으로 부각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1항 및 제21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범죄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달과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 수준의 범죄 묘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넘어서 과도하게 구체적이고 잔혹한 범죄 수법의 공표는 공공의 이익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표현을 기사 제목에까지 사용하여 자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
례
20

성관련 보도 - 성 관련 선정적 묘사

의결번호	제2024-294호	언론사	Turbonews(터보뉴스)
대상보도	Turbonews(터보뉴스) 2024년 02월 10일 「“요즘 경리 팬티라이너 노리는 새끼가 나 말고 또 생겼나 봄”(+텍험 주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① 심의 개요

여성 용품에 대한 이상 성욕을 드러낸 온라인 게시글을 인용 보도하면서, 성적 일탈 행위가 드러난 게시글과 이에 대한 댓글을 비식별 조치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권고 이유

성적 일탈이나 범죄와 관련된 보도라 하더라도, 보도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넘어선 자극적인 세부 묘사는 언론의 품위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성 관련 변태적 행위를 여과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정서적 불쾌감과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③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
례
21

자살 보도 - 자살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4-394호	언론사	(주)아이뉴스이십사
대상보도	아이뉴스24(inews24) 2024년 03월 06일 사회면 「숨진 공무원 '신상공개' 한 이유 "차 밀렸다"...온라인 카페에 '비판 쇄도'」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추정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i 심의 개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직위와 담당업무가 드러난 사진, 직급, 연령대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신상정보들을 함께 공개하여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 권고 이유

해당 보도에서는 사망자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직급, 연령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의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주변 인물들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도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건의 경위와 무관한 신원 정보의 공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에서 사망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한 행위는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사망자의 직위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가 드러난 사진 및 직급을 나타내는 표현을 삭제하여 당사자 특정 가능성을 완화하였다.

사 례
22

자살 보도 - 자살 장소 및 방법 등 묘사

의결번호	제2024-581호	언론사	경북탐뉴스
대상보도	경북탐뉴스 2024년 04월 26일 종합뉴스면 「바지 벗어서 목맨 피의자 유치장 관리 도마」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❶ 심의 개요

경찰서 유치장 내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용된 도구 및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과도하게 상세히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 제14조(자살 보도)**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❷ 권고 이유

해당 보도가 수사기관의 구금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공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 중 사건의 본질을 넘어선 구체적인 자살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자살 관련 보도의 경우,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일부 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모방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는 자살 보도 준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격권 침해 및 모방 자살 유발의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자살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표된 기사 내용을 삭제하고 자살 방법이 드러난 기사 제목을 객관적인 서술 형태로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바지 벗어서 목맨 피의자 유치장 관리 도마	구미경찰서 절도피의자 숨겨

사 례
23

자살 보도 - 자살 미화 및 합리화

의결번호	제2024-220호	언론사	중앙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중앙일보 2023년 12월 29일 사회면 「이선균 측 "유튜버 기습 방문, 잔혹한 상황…마음으로만 애도"」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묘사하는 유사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① 심의 개요

유명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서 성격의 메모 중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묘사한 문구를 여과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3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권고 이유

유서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을 고통 해소나 문제 해결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묘사하는 문구를 보도하는 것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인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표현은 독자에게 자살에 대한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일부 독자에게 자살을 대안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모방 자살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은 한층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에서 공개한 유서 성격의 메모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유족에게 남긴 유서 성격의 메모 내용을 삭제하였다.

사
례
24

자살 보도 - '극단적 선택' 표현 사용

의결번호	제2024-589호	언론사	주식회사 전민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전민일보 2024년 05월 23일 사회면 「익산 한 수상레저 선착장서 50대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i 심의 개요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처럼 묘사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3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자살 보도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므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개인의 능동적 선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표현이 직접적인 단어를 대체한 경우라도, 객관적인 사망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며, 자살 보도 관련 기준에서도 객관적 사실 전달에 중점을 둔 표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표현은 자살을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부 독자들에게 모방 자살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는 ‘타살 혐의 없어’라는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익산 한 수상레저 선착장서 50대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익산 한 수상레저 선착장서 50대 시신 발견... 타살 혐의 없어

2024년 '극단적 선택' 관련 시정권고 결정 현황 및 변경 사례

시정권고 결정 현황

(단위: 건)

14조 (자살 보도)				
1항 자살 신원 특징	2항 자살 동기 단정	3항		합 계
		자살 미화	극단적 선택	
76	-	65	85	226

변경 사례

언론사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이를 객관적인 사망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체하였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기존 제목을 보다 직관적인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교장공모제 민원 시달린 A장학사의 극단적 선택 ...해당 학교 입장 논란 가중	교장공모제 민원 시달린 A장학사의 극단적 선택 ...해당 학교 입장 논란 가중
②	한수원 20대 직원 극단적 선택 두고 뒷말 '무성'...직장 내 괴롭힘 있었나	한수원 20대 직원 사망 두고 뒷말 '무성'...직장 내 괴롭힘 있었나
③	결혼 앞둔 여성 살해한 50대男...범행 후 극단선택	결혼 앞둔 여성 살해한 50대男...범행 후 숨진채발견
④	제주 공원서 대낮 흉기 사망, 극단적 선택 추정	제주 공원서 대낮 흉기 사망, '타살 혐의 없음
⑤	'왕좌의 게임' 캐릭터 아니었어?...AI 챗봇과 대화하던 美 소년, 극단적 선택	챗봇과의 대화가 부른 비극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은?

사 례
25

마약 및 약물 보도 - 약물의 구매 및 사용 방법 묘사

의결번호	제2024-232호	언론사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대상보도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2024년 01월 13일 시민의창면 「텔레그램 속 "현실" 2화」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류의 명칭, 투약 장면, 구입 경로, 가격 등을 상세히 언급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① 심의 개요

메신저를 통한 마약 유통 실태를 보도하면서, 마약류의 명칭과 가격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 이미지, 판매자로 추정되는 SNS 계정명, 실제 약물 투여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①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권고 이유

영상 일부에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해당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의 내용을 인지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구입 경로로 추정되는 판매자 계정, 주요 검색 키워드 및 관련 은어 등이 비식별 처리 없이 그대로 공개되어, 마약 및 약물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에서 공개된 마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일부 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모방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약류의 명칭과 가격이 드러난 메신저 대화 사진, 구입 경로로 추정되는 판매자 계정명, 실제 약물 투여 방법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였다.

사
례
26

마약 및 약물 보도 - 약물의 복용방법 및 환각적 효능

의결번호	제2024-673호	언론사	사단법인 단비뉴스
대상보도	단비뉴스 2024년 04월 26일 청년면 「마약 끊고 싶어도 도움 청할 곳 없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마약류 약품의 사용량, 구입 경로 및 가격, 복용 방법, 환각 효능 등을 상세히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청년층의 마약 중독 실태를 보도하면서, 마약류의 종류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은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복용자의 투약 후 느낌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①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마약 관련 보도의 특성상, 사실 전달과 마약 중독의 심각성 고발을 위해 일정 수준의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나, 마약 구입 방법, 가격, 투약 방법 및 투약 후 환각 경험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공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에서 공개된 마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마약 사용의 위험에 노출된 일부 독자들에게 투약 동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마약류 약품의 사용량, 구입 경로 및 가격, 복용 방법, 환각 효능 등이 포함된 내용을 삭제하였다.

사 례
27

충격·혐오감 -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주는 내용

의결번호	제2024-487호	언론사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4년 04월 03일 국제일반면 「[영상] "비단뱀 살려"...뱀으로 줄넘기한 남성들, 동물학대 논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해외에서 논란이 된 동물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살아 있는 동물을 줄넘기 도구로 사용하는 장면이 담긴 잔혹한 영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동물 학대 장면을 비식별 조치 없이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할 경우, 이를 접하는 독자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의 동물 학대 장면은 독자의 불안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문제된 동물 학대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였다.

사
례
28

기사와 광고의 구분 - 의료기관 광고

의결번호	제2024-492호	언론사	주식회사 매경헬스
대상보도	매경헬스 2024년 04월 08일 뉴스면 「관절전문 ○○○○병원 개원 21주년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기관명, 의료인명, 상세 주소, 전경 사진 등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권고 이유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과 위치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사에 바이라인이 삽입되어 있어, 독자들이 이를 해당 의료기관의 홍보성 기사로 인식하기보다 객관적 기사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의 구성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독자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의료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실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실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 본문에서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의료인명, 상세주소, 전경사진 등을 삭제하고, 기사 제목의 의료기관명을 비식별 처리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관절전문 ○○○○병원 개원 21주년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관절전문 Y병원 개원 21주년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사
례
29

기사와 광고의 구분 - 의료기기 광고

의결번호	제2024-873호	언론사	(주)머니투데이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e money today) 2024년 09월 09일 헬스·바이오면 「"노화로 처진 피부, 일반 레이저론 못 살려" 170가지 장비 써 본 의사의 깨달음」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i 심의 개요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홍보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기관명, 의료인명, 의료기기 제품명 및 사진, 의료인의 의료기기 성능·효과에 대한 보증 및 추천 발언 등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권고 이유

의료인의 이름, 의료기기 제품명과 관련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기의 성능과 효과를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사에 바이라인이 삽입되어 있어, 독자들이 이를 해당 의료기기의 홍보성 기사로 인식하기보다 객관적 기사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해당 기사의 구성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독자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 본문에서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제품명과 사진, 의료인의 의료기기 성능·효과에 대한 보증 및 추천 내용을 삭제하고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노화로 처진 피부, 일반 레이저론 못 살려 " 170가지 장비 써 본 의사의 깨달음	노화로 처진 피부, 교주파 리프팅이 효과적

사
례
30

기사 제목 - 본문과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된 제목

의결번호	제2024-254호	언론사	(주)머니앤밸류
대상보도	e머니에스(e money S) 2024년 01월 13일 「강경준 불륜녀와 잠적…»연락 끊고 무단 결근」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상간 의혹으로 피소된 유명 연예인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보도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기사 제목에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기사 본문에서는 불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동반 잠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제목에는 불륜 당사자들이 함께 잠적한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제목은 독자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독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강경준 불륜녀와 잠적... "연락 끊고 무단 결근"	강경준 불륜 여성, 잠적해 직장서 해고... "연락 끊고 무단 결근"

